

◆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-224호

도시관리계획(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국토해양부고시 제2009-933호(2009.09.28.)로 결정 고시된 「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지구단위 계획구역」 내 자곡동 632번지에 대하여 2016년 제9차 서울특별시 도시·건축공동위원회 (2016.07.13.)심의를 거쳐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 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(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지구단위계획)을 결정(변경) 고시하고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2016년 7월 28일

서울특별시장

I. 결정(변경) 취지

-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내 강남구 자곡동 632번지에 경상남도 재경기숙사(남명학사)를 건립하고자 도시관리계획을 결정(변경)하는 사항임.

II.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사항

①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(변경없음)

구분	구역명	위치	면적(㎡)			최초결정일	비고
			기정	변경	변경후		
기정	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	강남구 세곡동, 자곡동 일원	938,992.6	-	938,992.6	국토해양부고시 제2009-933호 (2009. 9. 28.)	-

②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(변경없음)

③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결정(변경)

1.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(변경)

구분	가구번호	면적(㎡)	획 지		비고
			위치	면적(㎡)	
기 정	도	4,479.8	강남구 자곡동 632	4,479.8	획지분할 불가
변 경	도·기·근	4,479.8	강남구 자곡동 632	4,479.8	획지분할 불가

- 변경사유서

구분	변경 내용	변경사유	비고
자곡동 632번지	가구번호 변경	기숙사,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하여 가구번호 변경	

2. 건축물에 관한 결정(변경)

구분	가구번호	계 획 내 용		비고
기정	도	허용용도	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 교육연구시설중 도서관	
변경	도·가·군	허용용도	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 교육연구시설중 도서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공동주택중 기숙사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중 가, 나목의 시설	

- 변경사유서

구분	변경 내용	변경사유	비고
자곡동 632번지	허용용도 추가	기숙사건립을 위한 허용용도 추가 (기숙사 및 제1종근린생활시설중 가, 나목의 시설)	

3. 기타 사항에 관한 계획(변경 없음)

4.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 없음)

III. 도시·건축공동위원회 수정가결 사항

- 높이계획은 5층 이하로 할 것
- 공공주택지구 계획 시 도서관 부지는 계획기준 상 복합커뮤니티 기능을 고려토록 하고 있는 바, 이를 감안하여 인접 공공청사(복합문화센터)에 지역주민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할 것
- 도서관과의 연계성 및 공공성을 제고하고 이용 시민의 시인성 및 접근성을 고려하여 다목적강당 및 커뮤니티 공간의 배치계획을 조정할 것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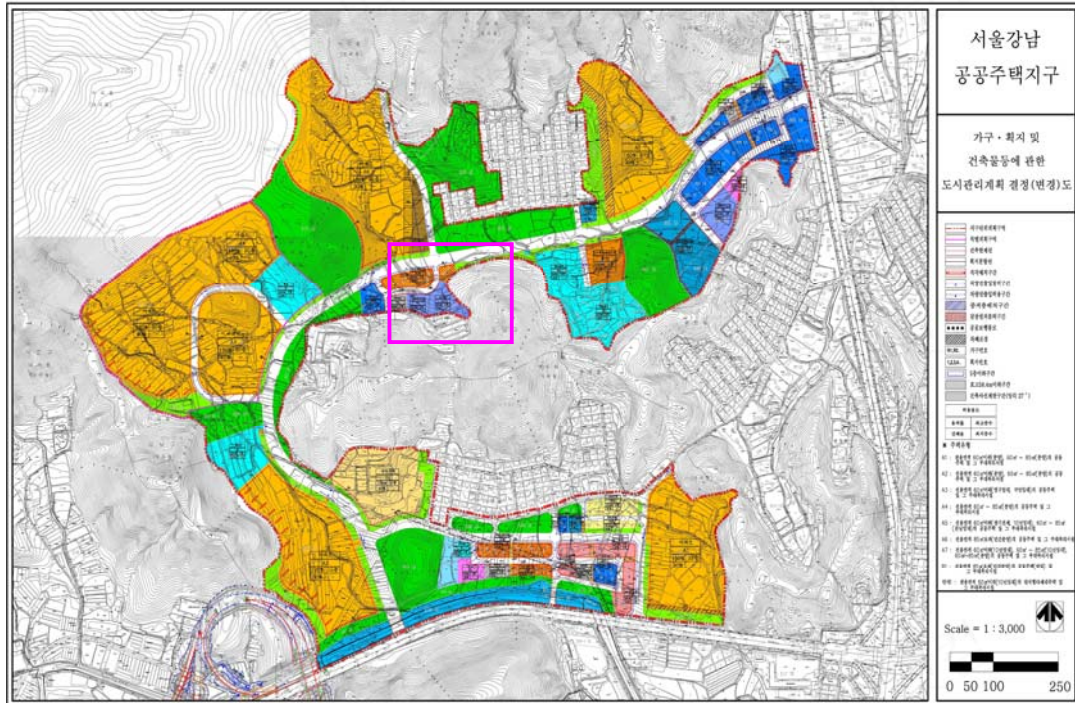
IV. 관계도면 : 붙임 참조 (세부 관계도면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도면 참조)

※ 첨부된 지형도면 등(그 외 세부 관계도면은 첨부 생략)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,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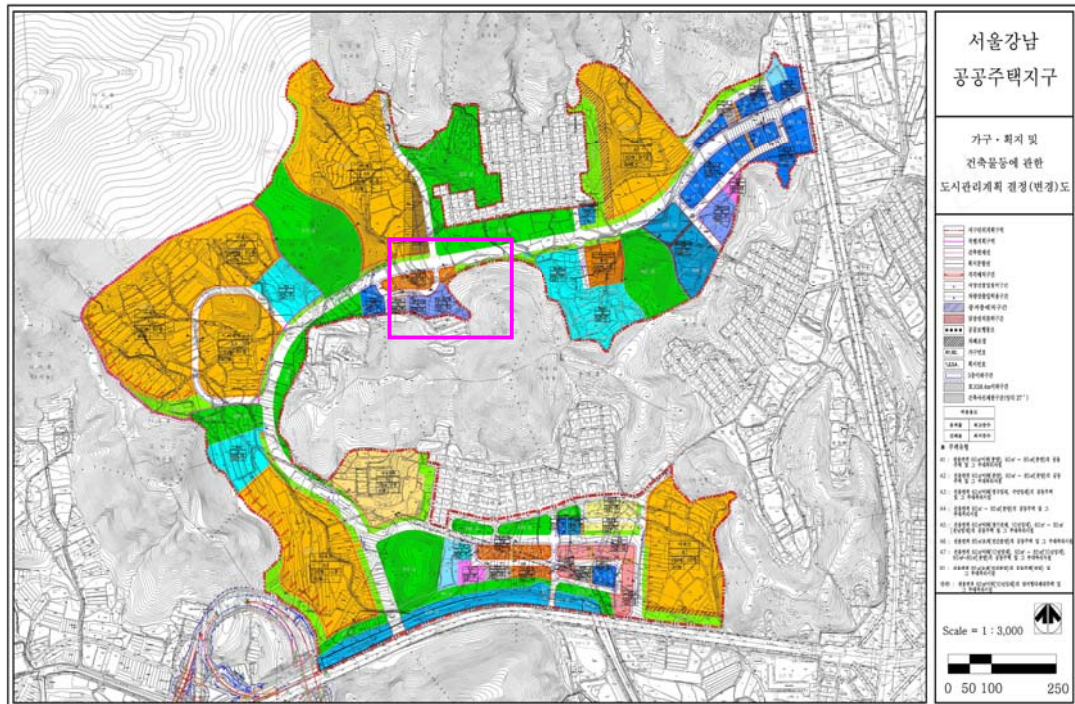
V. 열람장소 : 강남구 도시계획과(☎02-3423-6114),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과(☎02-2133-8381)에 관계도서를 비치 및 열람하고 있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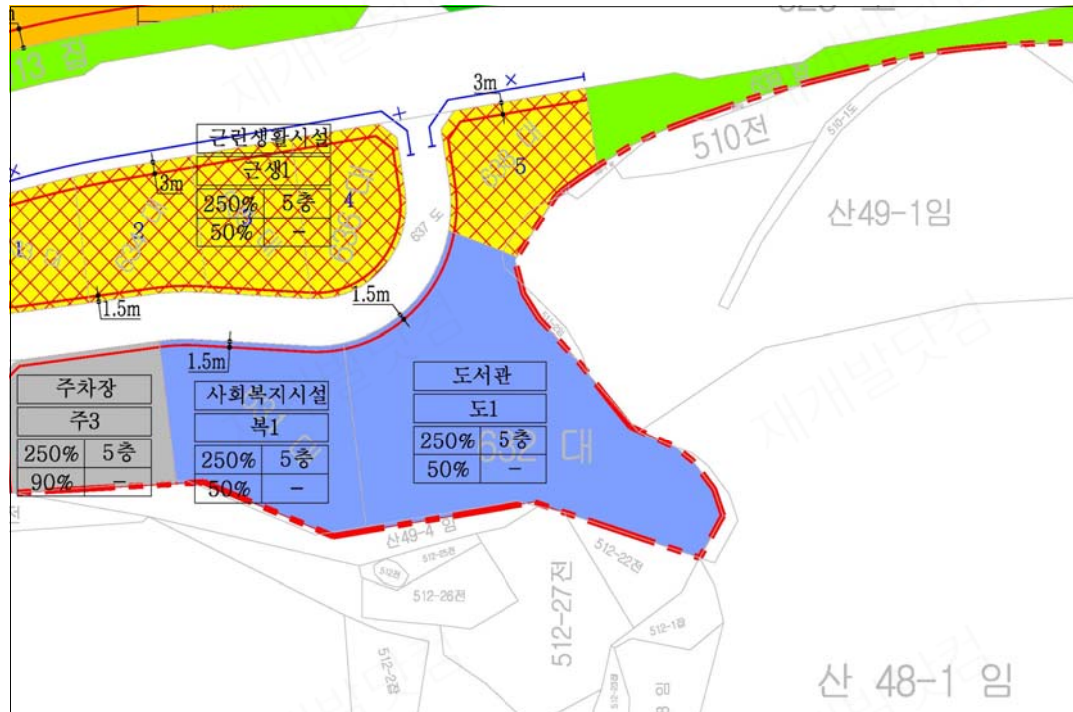
※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서비스(<http://luris.mltm.go.kr>)에 게시할 예정입니다

□ 가구·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(기정)도



□ 가구·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(변경)도



☐ 가구·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(기정) 상세도☐ 가구·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(변경) 상세도